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708호

2019년 4월 29일 (월)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19-738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

○ 파주시 공고 제2019-747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9-104호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 ····· 6

회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공고 제2019-738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5월 19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위생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2층 (우 10932)

○ 전화: 031-940-8531 / 팩스: 031-940-44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공고 제 2019 - 747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사건 등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신청 관련 규정 등을 명확화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변호비용 지원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호비용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안 제6조제2항)

나. 변호비용 반납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변호비용 청구자를 해당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라. 변호비용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해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4. 개정조례안: 별첨

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5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소송지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전화 : 031-940-5192 / FAX 031-940-40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

파주시 고시 제2019-104호

「지방세법」 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증 가 내 역
면 적	80.222㎢	80.919㎢	0.697㎢	○센트럴밸리일반산업단지(0.491㎢) ○적성일반산업단지(0.135㎢) ○축현2일반산업단지(0.071㎢)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 파주시 세정과(031-940-8711)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